

## 본회 농장검정 시행 요령 마련

본회 검정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검정위원회를 열고 농장검정 시행 요령을 마련, 8월부터 시행토록 했다.

검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농장검정 시행요령은 다음과 같다.

### 농장점검 시행 요령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농장검정은 농장자체종돈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농장자체 검정사업이나 종돈구입자에게 객관성 있는 검정성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한양돈협회 능력검정소가 (이하 검정소라 함) 성적의 기록, 분석, 보관, 전달 등의 검정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므로서 종돈개량에 기여 쾌자 함으로 검정성직의 공정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.

#### 제2조 (검정요건)

##### 1. 모든 보유두수

농장검정을 실시할 농장은 순종생산을 위한 최소 모돈보유 두수가 40두 이상 확보된 농장이어야 한다.

##### 2. 개시두수와 체중

개시두수는 암수 구별없이 20두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20 ~ 30kg ( $25\text{kg} \pm 5$ ) 일때 개시한다.

##### 3. 종료두수와 체중

종료두수는 개시두수의 90%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75 ~ 105kg ( $90\text{kg} \pm 15$ ) 일때 종료시킨다.

(단, 수의사의 진단서와 이표가 나타나는 사진등의 증명자료나 검정요원이 인정할 수 있는 두수는 예외로 한다.)

#### 제3조 (의무)

##### 1. 농장검정을 실시하는 농장은 생산되는 순종 수퇘지 자돈

의 5% 이상은 농장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1% 이상은 검정소에 출품하여 종돈의 능력을 공인받아야 한다.

(축산법 제5조,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3)

2. 검정돈은 검정개시일에 혈통등록을 신청하고 종료일전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.

3. 검정요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.

가. 종돈 보유두수 및 순종생산용 종돈두수와 검정사료성분 확인서(별첨 양식)

나. 소정의 검정회비는 검정개시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

다. 최근 6개월동안 오제스키질병과 돼지콜레라, 단독, 일분뇌염, 전염병 위장염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질병에 대한 3개월 내의 무발생 확인증사본과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합격율)** 농장검정의 합격율은 선발의미가 있는 50% 이상으로 하며 합격돈에 한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.

**제5조 (등록취소)** 농장검정 농장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농장은 등록을 취소한다.

**제6조 (성적의 발표)** 농장검정의 성적은 농장내의 개량이 목적이므로 검정소검정 성적의 발표에 의한 인식의 정착시까지 유보한다.

**제7조 (검정규정)**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돼지검정규정 (농수산부 고시 제85-59호, 1985. 11. 18)에 준한다.

#### 부 칙

\* 본 시행요령은 1988. 8. 1일부터 시행한다.